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상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2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장상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·권영희·김경영·김생환  
노식래·문장길·박순규·우형찬  
이경선·이광호·이상훈·이영실  
전병주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자연경관지구는 산지·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, 건축제한으로 건축행위가 한정적이었음.

이로 인해 노후·불량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,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마련하여 노후·불량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를 각각 40퍼센트, 5층·20m 이하로 완화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구역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(안 제39조제2항, 제4항 및 제7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 단서, 제7항 본문 및 제7항제2호 중 “소규모재건축사업”을 각각 “가로주택정비사업(공공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”으로 하고

제39조제7항제1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”을 “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중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</p> <p>2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<u>소규모재건축사업</u>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</p> <p>⑧ (생략)</p>	<p>1. ----- ----- <u>재개발사업</u>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역</p> <p>2. ----- ----- <u>가로주택정비사업(공공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